



포장관련 법률 일부개정고시

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제공

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했다. 식약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·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. 본 고에서는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.

- 편집자 주 -

주요 내용

가.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저장탱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내수성 재질인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·규격 신설(안 제 7.Ⅳ. 1. 1-38)

(1) 식품취급시설을 포함하여 식품용 조리기구 등의 재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추가·신설

(2) 다양한 기구 및 용기·포장 개발 유도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
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-56호

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.Ⅳ. 1-37 다음에 1-3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-38 경화폴리에스터수지(cross-linked polyester resin)

가. 정의

경화폴리에스터수지란 기본 중합체(base polymer) 중 폴리올 또는 에폭사이드와 불포화 이염

기산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%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.

나. 재질규격(mg/kg)

1) 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크롬 : 100 이하(합계로서)

다. 용출규격(mg/L)

1) 중금속 : 1.0 이하(납으로서)

2) 과망간산칼륨소비량 : 10 이하

3) 증발잔류물 : 30 이하

4) 테레프탈산 : 7.5 이하

5) 이소프탈산 : 5.0 이하

라. 시험방법

1) 납

V. 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일반시험법 1. 납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

2) 카드뮴

V. 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일반시험법 2. 카드뮴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

3) 수은

V. 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일반시험법 3. 수은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

4) 6가크롬

V. 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일반시험법 4. 6가크롬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

5) 중금속

V. 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일반시험법 6. 중금속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

6) 과망간산칼륨소비량

V. 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일반시험법 7.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

7) 증발잔류물

V. 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일반시험법 8. 증발잔류물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

8)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

1-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라. 시험방법 10)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따라 시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.



〈신·구조문 대비〉

현행	개정안
<p>제 7.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</p> <p>I. ~ III. (생략)</p> <p>IV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재질별 규격</p> <p>1. 합성수지제</p> <p>1-1 ~1-37 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2. ~ 8. (생략)</p> <p>V. (생략)</p>	<p>제 7.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</p> <p>I. ~ III. (현행과 같음)</p> <p>IV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재질별 규격</p> <p>1. 합성수지제</p> <p>1-1 ~1-37 (현행과 같음)</p> <p>1-38 경화폴리에스테르수지(cross-linked poly ester resin)</p> <p>가. 정의</p> <p>경화폴리에스테르수지란 기본 중합체(base polymer) 중 폴리올 또는 에폭사이드와 불포화 이염기산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%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.</p> <p>나. 재질규격(mg/kg)</p> <p>1) 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크롬 : 100 이하(합계로서)</p> <p>다. 용출규격(mg/L)</p> <p>1) 중금속 : 1.0 이하(납으로서)</p> <p>2) 과망간산칼륨소비량 : 10 이하</p> <p>3) 증발잔류물 : 30 이하</p> <p>4) 테레프탈산 : 7.5 이하</p> <p>5) 이소프탈산 : 5.0 이하</p> <p>라. 시험방법</p> <p>1) 납</p> <p>V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일반시험법 1. 납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2) 카드뮴</p> <p>V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일반시험법 2. 카드뮴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3) 수은</p> <p>V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일반시험법 3. 수은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4) 6가크롬</p> <p>V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일반시험법 4. 6가크롬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5) 중금속</p> <p>V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일반시험법 6. 중금속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6) 과망간산칼륨소비량</p> <p>V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일반시험법 7.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7) 증발잔류물</p> <p>V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일반시험법 8. 증발잔류물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8)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</p> <p>1-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라. 시험방법 10)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2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V. (현행과 같음)</p>
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한시적 기준·규격 인정 품목에 대한 공정규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래 한시적 기준·규격으로 인정한 천연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하여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으로 신설 등 현행 「식품첨가물의 기준·규격」을 제·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적 기준·규격으로 운영하여 온 천연첨가물 「 α -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리아제」를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함(안 II. 제3. 나. 207)

나. 총칙 중 성상 관련 단서조항 추가 개정(안 I. (1))

(1)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중 「성상」에서 색, 맛, 냄새 이외의 분말, 액체, 고체 등의 형태는 단지 참고사항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적·부 판정의 기준에서 제외토록 현행 총칙 중 성상 관련 단서조항 추가

다. 「글루콘산철」 등 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(안 II. 제3. 가. 330 나. 36, 174)

(1) 「글루콘산철」의 사용기준 중 올리브를 올리브가공품으로 개정

(2) 이 고시 II. 제 2. 「일반사용기준」에서 이미 영·유아식 등에 「스테비올배당체」 및 「효소처리 스테비아」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품목의 개별 품목항에 중복 기재하고 있어 이 내용을 삭제함

라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기구 뿐 아니라 용기·포장의 살균·소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함(안 III. 제3. 1~9)

마. 한시적 기준·규격으로 운영하여 온 「구연산」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함 (안 III. 제3. 10)

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-57호
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개정고시안
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
I. 총칙 (1)과 (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이 고시에 실린 식품첨가물(이하 “첨가물”이라 한다)의 적·부는 총칙, 제조기준, 일반사용기준, 품목별 규격 및 기준, 일반시험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. 다만,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중 성상은 색, 냄새, 맛에 한하여 적·부 판정에 적용한다.

(2) 물질명에 「」를 붙인 것은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규정한 첨가물을 나타낸다.

I. 총칙 (52) 다음에 (5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53) “올리브가공품”은 올리브 과실을 식염, 간장, 식초 또는 기름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.

II. 제 3. 가. 330. 글루콘산철 중 “글루콘산철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”을 “글루콘산철의 사용기준”으로 하고, 제1호 “올리브 : 0.15g/kg”을 “올리브가공품 : 0.15g/kg 이하”로 한다.

II. 제 3. 나. 36의 스테비올배당체 중 “스테비올배당체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”을 “스테비올배당체의 사용기준”으로 하고,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며,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.

II. 제 3. 나. 174의 효소처리스테비아 중 “효소처리스테비아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”을 “효소처리스테비아의 사용기준”으로 하고,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며,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.

II. 제 3. 나. 206. 아스파라기나아제 다음에 207. α -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III. 제 2. 일반사용기준 중 “기구 및 용기·포장”을 “기구 및 용기·포장(이하 “기구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III. 제 3. 1.의 에탄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의 각 호외의 부분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기구”를 각각 “기구등”으로 한다.

III. 제 3. 2.의 염화-N-데실-N,N-디메틸-1-데칸아미늄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“기구”를 “기구등”으로 한다.

III. 제 3. 3.의 염화알킬(C12-C18)벤질디메틸암모늄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의 각 호외의 부분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기구”를 각각 “기구등”으로 한다.

III. 제 3. 4.의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의 각 호외의 부분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기구”를 각각 “기구등”으로 한다.

III. 제 3. 5.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의 각 호외의 부분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기구”를 각각 “기구등”으로 한다.

Ⅲ. 제 3. 6.의 차아염소산수의 사용기준의 각 호외의 부분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기구”를 각각 “기구등”으로 한다.

Ⅲ. 제 3. 7.의 폴리(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)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의 각 호외의 부분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기구”를 각각 “기구등”으로 한다.

Ⅲ. 제 3. 8.의 과산화수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의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기구 및 용기·포장”을 “기구등”으로 하고, 제1호 중 “기구”를 각각 “기구등”으로 한다.

Ⅲ. 제 3. 9.의 과산화초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의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기구 및 용기·포장”을 “기구등”으로 하고, 제1호 중 “기구”를 각각 “기구등”으로 한다.

Ⅲ. 제 3. 9. 과산화초산 다음에 10. 구연산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Ⅳ. 36. 제1법 6) (2) ② · 중 “세척액 150~500ml 대신에 물 50ml를 사용하여 상기 시험과 동일하게 조작한다”를 “반응혼합액 0.1ml 대신에 반응혼합액 1ml를, 세척액 150~500ml 대신에 물 50ml를 사용하여 상기 시험과 동일하게 조작한다”로 한다.

Ⅳ. 36. 제3법 6) (2) ② · 중 “세척액 150~500ml 대신에 물 50ml를 사용하여 상기 시험과 동일하게 조작한다”를 “반응혼합액 0.1ml 대신에 반응혼합액 1ml를, 세척액 150~500ml 대신에 물 50ml를 사용하여 상기 시험과 동일하게 조작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(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경우를 포함)된 「구연산」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을 적용한다.

제4조(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」으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필한 「 α -아세트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」 및 「구연산」은 이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☐